

2. IMF 1年, 기업 구조조정의 성과

- (기업 구조조정의 성과)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은 경영투명성 제고, 재무구조 개선, 사업구조개선, 부실기업 정리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방향)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초점을 두어야 함. 공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의한 워크아웃의 신속한 진행, 부채탕감후 매각방식을 통한 부실기업 정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대기업 기업구조조정의 성과

- 경영 투명성 제고

- 정부는 경영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 사외이사제 도입 ▲ 대표소송권 등 소수주주권의 강화 ▲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 지배주주의 책임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음
- 사외이사의 경우, 555개 12월 결산 상장사가 선임한 사외이사의 수는 667명으로 회사 당 평균 1.2명이었고¹⁾, 내년부터 상장법인은 등기 이사수의 1/4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있음
- 소수주주권에 속하는 대표소송권,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등의 권리 행사 주식 비율이 종전보다 대폭 낮추어졌고²⁾, 상법 개정으로 누적투표제가 도입됨으로써 소수주주의 경영 감시 기능은 대폭 강화되었음
- 결합재무제표의 도입(99년)을 통한 회계상 투명성 제고, 기조실 또는 비서실 해체, 지배주주의 대표이사 등재, 상법에서 사실상의 이사 책임 조항 신설 등에 따라 지배주주의 경영 책임도 많이 강화되었음

- 재무구조 개선

- 30대 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액은 98년 2월 33조 5천억 원에서 98년 3월말 현재 23조 5천억 원으로 30% 축소되었고, 내년 말까지 완전 해소를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조기 상환,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전환, 대주주 立保에 의한 개인보증으로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음

1) 「조선일보」, 98년 4월 6일자

2)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대표소송권은 1%에서 0.05%,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은 1%에서 0.5%, 장부열람권은 3%에서 1%로 각각 권리행사 주식비율이 낮춰졌음

- 30대 대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 8월까지 외국인에게 계열사 또는 사업부문 매각 및 지분 매각을 한 건수는 24건, 금액은 47억 8,000만 달러에 달함³⁾

- 사업구조 개선

- 30대 대기업들은 지난 5월 각 그룹별로 경쟁력이 있는 4~5개 주력 업종으로 전문화하겠다는 사업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구조조정을 위한 계열사간 결합도 전체 219건 중 103건 (44.7%)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35.2%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 5대 대기업간에는 이미 5개 업종(석유화학, 항공, 철도차량, 선박엔진, 정유)의 사업구조 조정이 합의됨으로써 해당 부문의 과잉 생산설비 해소(향후 5년간 20조 원의 투자비 절감)와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며, 반도체 부문의 사업구조 조정도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합의안이 나올 전망임

- 부실기업 정리

- 대기업들의 부실 계열사 정리는 지난 6월 55개 기업의 퇴출에 이어서, 연말까지 5대 대기업의 계열사 20여개가 추가로 퇴출될 예정임
- 또한 6~64대 대기업 중 13개 그룹 35개사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 그러나 기아, 한보 등의 부도기업의 정리는 채권단 내부의 이해 관계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음. 이것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주원인임

□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의 방향

- 단기간의 실적보다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

- 구조조정은 부실 계열사의 퇴출, 과잉 생산 업종에서 사업 교환 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시간을 두고 그 성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
- 단기간의 실적을 위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구조조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음

3) 「매일경제신문」, 1998년 7월 9일자

- 공정한 손실 분담의 원칙에 따른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과 채권은행단간 이해 상충으로 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이견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음
- 기업주는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려 하고, 채권단은 부채탕감이나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 부담을 꺼리기 때문임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채권은행단이 엄밀한 기업 가치평가작업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채권자, 주주 및 경영진의 공정한 손실분담 원칙을 제시해야 할 것임

- 부채탕감후 매각방식을 통한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

- 기아차 처리가 3차 입찰까지 가면서 지연된 원인은 채권단이 자신의 피해를 덜 보려는 保身主義에 있음
- 채권단이 당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부실기업의 처리를 지연할수록, 부실 규모는 더욱 늘어나서 구조조정 비용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됨
-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한라펄프의 매각처럼 채권단이 부채 탕감후 매각 방식을 과감히 채택해야 할 것임

(박 홍 진 *hjpark@hri.co.kr* ☎724-4032)

< 참고: 부채탕감후 매각방식을 통한 한라펄프의 매각 >

- 한라펄프의 채권단은 한라펄프의 부채 4,500억 원을 담보 유무에 따라 20~60%를 탕감한 후, 미국 보워터사에 2억 1천만 달러에 매각. 매각 대금은 일시불로 채권 상환에 사용
- 이 경우 인수자는 부채가 0인 상태에서 회사 운영을 할 수 있으며, 담보 있는 채권자도 대출금의 75~80%를 당장 돌려 받기 때문에 현재 금리 하에서 1~2년 뒤에는 원금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음
- 따라서 부실기업 정리 방식으로 5~10년이 지난 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고, 회생 성공률도 30%에 불과한 법정관리보다 부채탕감후 매각방식이 훨씬 유리함